【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O 발의일자 : 2019년 9월 6일

○ 발 의 자 : 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지만·이영애·정천락 의원

O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2.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O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O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 협조와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O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O 이 제정조례안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 제29조1)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법 제9조2)에서 규정하는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O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조례안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 ▶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임을 명시하여 정의하였음.
 - 이는 법 제9조에서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행기관을

¹⁾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u>광역시</u>·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 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u>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u>,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 협의회를 둘 수 있다.

²⁾ 제9조(사무기구)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u>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u>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3조3)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 공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임.

- 안 제3조에서는 제1항에 대행기관의 장(長)인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이하 "대구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대구지역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대구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통일 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4)
- ▶ 안 제4조에서는 제1항에서 대구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대구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³⁾ 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u>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u>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⁴⁾ 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u>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u>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 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안 제5조에서는 대구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
 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 안 제6조에서는 대구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해「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O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시의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그 운영 및 사무처리와 대구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법 제92조5)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행정 안전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6한바 있으며, 지역회의에 대한

⁵⁾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u>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u>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⁶⁾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618(2018. 7. 17.)호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한 법 시행령 개정가('19.7.30.)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O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⁷⁾ 법 시행령 개정 내용[제30조의2(경비의 지원)] [대통령령 제30006호, 2019. 7. 30., 일부개정]

⁽개정 전) 국가 또는 <u>지방자치단체는</u> 예산의 범위에서 <u>협의회의</u>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신설)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 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요 및 현황

- □ **설치근거** : 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
 - ※ 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설립목적

- O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
-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 ※ 1987, 10.29 헌법 9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 변경

□ 주요기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민주평통법 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 직

O 의 장: 대통령(민주평통법 제6조)

O 부 의 장 : 25명 (17시·도, 이북5도, 여성, 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

- 수석부의장 : 의장 직무를 대행.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위원장 겸임

○ 자문위원 : 19,000명(제19기 임기 : 2019. 9. 1~2021. 8. 31, 2년)

- 국내 : 15.400명(지역대표 3.118. 직능대표 12.282)

- 해외 : 3,600명(124개국 재외동포대표)

○ 지역회의 : 23개(17시·도, 이북5도, 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

○ 지역협의회 : 271개(국내 228개 시·군·구, 해외 43개 지역별)

O 사 무 처 : 민주평통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정원 76명)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현황≫-

- (기능) 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
- (역할) 평화통일 정책수립·추진사항 건의 및 자문
- (조직) 대구지역 부의장 : 배한동(73세)/ 위원수 : 551명(광역·기초의원 99, 직능단체 452)
- (사업) 대구평화통일포럼, 통일아카데미, 통일골든벨 등
- (예산) 160백만원(통일관련 사업비 150, 운영비 10)/ 대구시 보조금 지원